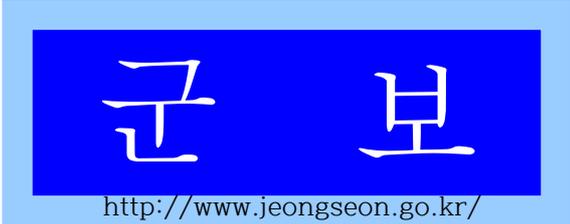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정 선 군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8호 2022. 10. 19.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189호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2-1194호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2-1207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2-1210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4
- 정선군 공고 제2022-1211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189호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매년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의 유지관리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는바,
- 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개정을 통해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외 5개소의 주요시설물 이용요금 인상
- 대상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물	비고
1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5 일원	데크,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등	문화관광과
2	화암약수·동굴·카트체험장	화암면 화암리 1179, 540 일원	데크, 편의시설 등	"
3	아우라지 관광지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	데크, 편의시설 등	"
4	도사곡휴양림	사북읍 지장천로 436-27 일원	데크, 펜션, 편의시설 등	"
5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정선읍 동강로 2908 일원	데크, 편의시설 등	환경과
6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신동읍 고성리 산17 일원	데크, 편의시설 등	산림과

○ 세부 변경 내용

1) 회동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오토캠핑장	40,000	50,000	50,000	신설

2)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 고
일반	개인	5,000 → 7,000	3,500 → 5,500	2,000 → 4,000	
	단체	4,500 → 6,500	3,000 → 5,000	1,500 → 3,500	
폐광지역주민 /명예군민 /자매결연도시민 /정선군숙박 관광객	개인	3,500 → 5,500	2,500 → 4,500	1,500 → 3,500	
	단체	3,000 → 5,000	2,000 → 4,000	1,000 → 3,000	
투표자	개인	3,000 → 5,000	2,000 → 4,000	-	
	단체	2,500 → 3,500	1,500 → 3,500	-	

(단위 : 원)

구 분	어른 / 1인승	청소년·군인 / 2인승	어린이 / 유아용(신규)	비 고
모노레일	3,000	2,000	1,500	
카트	12,000	17,000	10,000	

3) 화암동굴·약수, 아우라지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노지	20,000 → 0(삭제)	20,000 → 0(삭제)	20,000 → 0(삭제)	노지삭제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캐라반	3인용	60,000 → 0(삭제)	70,000 → 0(삭제)	100,000 → 0(삭제)	캐라반 삭제
	4인용	70,000 → 0(삭제)	80,000 → 0(삭제)	120,000 → 0(삭제)	
	6인용	80,000 → 0(삭제)	100,000 → 0(삭제)	150,000 → 0(삭제)	

4)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5)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6)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야영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노지야영장	10,000 → 20,000	20,000 → 30,000	20,000 → 30,000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아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설명	비 수 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데 크	30,000	40,000	40,000	
오토캠핑	40,000	50,000	50,000	카라반 및 트레일러 불가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 1 ~ 8. 31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은 사용금지

제2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원)

구 분		화 암 동 굴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1 인 승	2인승	유 아 용
일 반	개인	7,000	5,500	4,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10,000
	단체	6,500	5,000	3,500						
· 폐광지역 주민 · 명예군민 · 자매결연도시민 · 정선군 숙박 관광객	개인	5,500	4,500	3,500						
	단체	5,000	4,000	3,000						
투표자	개인	5,000	4,000	2,000						
	단체	4,500	3,000	2,000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비 수 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공휴일		
노 지	-	-	-	<삭제>
데 크	30,000	40,000	40,000	
캐라반	3인용	-	-	<삭제>
	4인용	-	-	<삭제>
	6인용	-	-	<삭제>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3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별표 2]

시설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 공휴일		
산막	26㎡ (8평형)	40,000	60,000	60,000	
	56㎡ (17평형)	80,000	120,000	120,000	
	79㎡ (24평형)	100,000	170,000	170,000	
	195㎡ (59평형)	250,000	350,000	350,000	
데크		30,000	40,000	40,000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2]

야영장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사용료	30,000원	40,000원	40,000원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전일

제5조(「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야영테크			노지야영장			비고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수기		성수기 (7~8월)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야영장	30,000	40,000	40,000	20,000	30,000	30,000	텐트 1조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5. 전기사용은 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소형가전만 사용(총 합계 500W 미만) 가능하며,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시설의 이용료) ① 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194호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1. 평가위원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2. 10. 17.(월) ~ 10. 26.(수)

나.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다. 모집분야 : 도시계획(공원, 도로 등), 조경·녹지, 관광,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타지자체 공무원

라. 역할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마. 자격요건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공무원
- 2)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3)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5)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제외대상

- 1)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회피사유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 자격요건 및 제외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

2.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0. 26.(수)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기획관실(기획팀)

다. 접수방법 : 공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2) 팩 스 : 033-560-2592

3) 전자메일 : lunarize@korea.kr

라.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자격증명서류 각 1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

2) 팩스, 전자메일 신청시 반드시 전화(033 - 560 - 2214)로 접수 확인하여야 함

3.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2. 11. 1.(화) 14:00 ~

나. 선정인원 : 7명 (예비위원 2명 별도 선정)

다. 선정방법

1) 업체의 제안서 제출 시 추천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추천 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라.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

※ 연락 불능 및 불참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마. 위원장은 평가일 위원중에서 호선

4. 제안서 평가일정

가. 일 시 : 2022. 11. 04.(금) 14:00

나. 장 소 : 정선군청 2층 소회의실(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해촉 절차 없이 위·해촉된 것으로 봄.

나. 상기 일정은 정선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접수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되며 일절 반환하지 않고, 또

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평가수당 지급함.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로 관리될 예정이며, 등록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을 엄수하기 바람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기획관실 기획팀(☎ 033 - 560 - 2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평가위원 활동경력 등)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당지급용)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인적 사항 ~ 3. 직장 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 직급 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렬까지 기재
 -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 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 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정선군 공고 제2022-1207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 이유

-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 해당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 (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여성청소년과)
- 전 화: 033-560-2815

- 팩 스: 033-560-2141
- 이 메 일: gmlwls6859@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 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 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
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

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선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10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리·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2. 주요내용

- 조례 별표에서 고한21를 신설함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조정)	통합	분할	폐지			
정선군	184	1	-	-	-	증1	185	
고한읍	20	1				증1	21	고한21리

3. 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8.(2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2022-1210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 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5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삼우주택,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설리	5	북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압,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남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6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병방, 어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끝 역전 일부 아리채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림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옛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굴암리	1	굴암리	상굴암, 본동, 하굴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1	고한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13리 14리 15리 16리 17리 18리 19리 20리 21리	만항, 평화촌 두문동 일부 두문동 일부, 소두문동 박심리, 삼봉 상갈래 일부, 절골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중갈래 일부, 진골 고한주공아파트, 강원랜드다목적숙소 일원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시장 일부 막골, 신사택 구 읍사무소 일원 북부사택, 홀아버골 고토일 부금소, 목골, 진밭골 물한이골 양지마을 하갈래 시장 일부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파인엔유아파트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널, 피내, 주막거리, 발전
	사북리	12	사북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범바위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시내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골말, 화절령, 구)동원아파트 일원 도사곡 웃사북 일부, 소잡는골 중앙시장 일원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웃사북 일부 북일 산수빌아파트 일원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본동, 의림길 유문동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재건촌 노일 일부, 용주골 노일 일부, 역전 남들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안길운 개미촌, 구룡동 시장 일원 함백초등학교 일원 새골 수해민주택 일원 안경다리 함백중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2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새비재, 설령, 전략촌 새비재, 설령, 전략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2리	평구, 수춘, 고림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2리 3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수동, 번평, 고재벌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2리 3리 4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미친, 천포, 멧둔지, 싸내 오산, 좌사(양지·음지)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2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상석항, 하석항, 배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2리	한치, 되기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2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면	문곡리	3	문곡1리 2리 3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탑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2리 3리 4리 5리	멀미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진, 덕만, 밭구덕 삼거리, 척산 증산(역전) 묵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2리	갯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들, 능바위, 양지마을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2리 3리	거칠현, 전개, 수밭, 노름골, 창말 괌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멧둔, 문두골, 의평 음달(역전), 샘뜰,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2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체운, 석대, 수와우 광탄, 삼중,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쾌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중앙동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퇴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떡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3	남평1리 2리 남평3리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화마을, 농촌 휴양 단지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펜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줄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 장재터, 오장동, 우동골, 절골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임계면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발땃,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둥이골 골말 일부, 옹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뒗말, 고독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벼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 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밭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읍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벳둔골, 구룡동, 무널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정선군 공고 제2022-1211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반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리·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2. 주요내용

- 규칙 별표에서 고한6리와 고한 21리 반을 조정함 (별표서식)

조 정 전				조 정 후				조 정 사 유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고한 6리	1반	53	118	고한 21리	1반	51	116	주민 건의
	2반	50	122		2반	41	103	
	3반	35	80		3반	35	80	
	4반	49	112		4반	49	112	
	5반	52	109	5반	52	109		
	6반	-	-	고한 6리	1반	9	19	
	7반	23	27		2반	23	27	
	8반	39	81		3반	41	83	

3. 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8.(2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지번 및 요도
3.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지번 및 요도작성

1. 지번조서

(고한읍 6리)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274-15	도로	392	1반
고한읍 고한리 274-17	하천	23,883	
고한읍 고한리 274-151	대	148	
고한읍 고한리 274-152	도로	200	
고한읍 고한리 274-153	대	370	
고한읍 고한리 274-182	하천	276	
고한읍 고한리 274-183	도로	3,859	
고한읍 고한리 274-231	하천	2,318	
고한읍 고한리 274-232	하천	336	
고한읍 고한리 274-247	대	148	
고한읍 고한리 274-93	하천	987	
고한읍 고한리 274-94	하천	157	
고한읍 고한리 284	대	216	
고한읍 고한리 285	대	130	
고한읍 고한리 285-1	대	90	
고한읍 고한리 285-2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5-3	대	130	
고한읍 고한리 285-4	대	142	
고한읍 고한리 285-5	대	84	
고한읍 고한리 285-6	대	102	
고한읍 고한리 285-7	대	116	
고한읍 고한리 285-8	대	178	
고한읍 고한리 286	대	274	
고한읍 고한리 286-1	대	108	
고한읍 고한리 286-10	대	25	
고한읍 고한리 286-11	대	84	
고한읍 고한리 286-12	대	314	
고한읍 고한리 286-13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6-14	대	12	
고한읍 고한리 286-15	대	130	
고한읍 고한리 286-16	대	248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286-17	대	48	
고한읍 고한리 286-18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6-19	대	108	
고한읍 고한리 286-2	대	97	
고한읍 고한리 286-20	대	108	
고한읍 고한리 286-21	대	320	
고한읍 고한리 286-22	대	178	
고한읍 고한리 286-23	대	96	
고한읍 고한리 286-24	대	96	
고한읍 고한리 286-25	대	164	
고한읍 고한리 286-26	대	72	
고한읍 고한리 286-27	대	154	
고한읍 고한리 286-28	대	84	
고한읍 고한리 286-29	대	226	
고한읍 고한리 286-3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6-30	대	492	
고한읍 고한리 286-31	대	190	
고한읍 고한리 286-32	대	166	
고한읍 고한리 286-33	대	79	
고한읍 고한리 286-34	대	118	
고한읍 고한리 286-35	대	142	
고한읍 고한리 286-4	대	96	
고한읍 고한리 286-5	대	90	
고한읍 고한리 286-6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6-7	대	118	
고한읍 고한리 286-8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6-9	대	72	
고한읍 고한리 289	대	224	
고한읍 고한리 289-1	대	152	
고한읍 고한리 289-10	대	60	
고한읍 고한리 289-11	대	96	
고한읍 고한리 289-12	대	114	
고한읍 고한리 289-13	대	354	
고한읍 고한리 289-14	대	272	
고한읍 고한리 289-2	대	102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289-3	대	102	
고한읍 고한리 289-4	대	84	
고한읍 고한리 289-5	대	62	
고한읍 고한리 289-6	대	212	
고한읍 고한리 289-7	대	182	
고한읍 고한리 289-8	대	123	
고한읍 고한리 289-9	대	36	
고한읍 고한리 290	대	96	
고한읍 고한리 290-1	대	142	
고한읍 고한리 290-2	대	232	
고한읍 고한리 290-3	대	184	
고한읍 고한리 290-4	도로	12	
고한읍 고한리 290-5	도로	66	
고한읍 고한리 292	대	250	
고한읍 고한리 292-1	대	235	
고한읍 고한리 292-2	도로	21	
고한읍 고한리 292-3	도로	78	
고한읍 고한리 36	대	496	
고한읍 고한리 36-22	대	344	
고한읍 고한리 36-23	대	305	
고한읍 고한리 36-24	대	276	
고한읍 고한리 36-31	대	537	
고한읍 고한리 36-32	대	507	
고한읍 고한리 36-33	대	801	
고한읍 고한리 36-4	철도용지	1,656	
고한읍 고한리 36-45	대	918	
고한읍 고한리 36-52	대	74	
고한읍 고한리 36-53	대	177	
고한읍 고한리 36-54	대	206	
고한읍 고한리 36-55	대	236	
고한읍 고한리 36-56	대	255	
고한읍 고한리 44-12	도로	1,535	
고한읍 고한리 44-11	철도용지	82	
고한읍 고한리 44-2	철도용지	533	
고한읍 고한리 44-5	철도용지	5,595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7	도로	572	
고한읍 고한리 산1-10	철도용지	3,588	
고한읍 고한리 산1-17	임야	4,890,186	
고한읍 고한리 산1-18	철도용지	9,818	
고한읍 고한리 36-25	대	266	2반
고한읍 고한리 36-34	대	916	
고한읍 고한리 36-45	대	461	
고한읍 고한리 36-57	대	276	
고한읍 고한리 35	철도용지	284	
고한읍 고한리 36-26	대	272	3반
고한읍 고한리 36-27	대	271	
고한읍 고한리 36-28	대	197	
고한읍 고한리 36-29	대	550	
고한읍 고한리 36-35	대	378	
고한읍 고한리 36-36	대	378	
고한읍 고한리 36-37	대	368	
고한읍 고한리 36-38	대	540	
고한읍 고한리 36-39	대	366	
고한읍 고한리 36-40	대	383	
고한읍 고한리 36-41	대	389	
고한읍 고한리 36-42	대	394	
고한읍 고한리 36-43	대	483	
고한읍 고한리 36-44	대	798	
고한읍 고한리 36-45	대	918	
고한읍 고한리 36-47	대	2,731	
고한읍 고한리 36-49	대	476	
고한읍 고한리 36-50	대	480	
고한읍 고한리 36-51	대	480	
고한읍 고한리 36-58	대	265	
고한읍 고한리 36-6	임야	86	
고한읍 고한리 36-60	대	291	
고한읍 고한리 36-61	대	193	
고한읍 고한리 36-62	대	49	
고한읍 고한리 36-63	대	332	
고한읍 고한리 36-64	대	35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산1-11	철도용지	2,083	
고한읍 고한리 산1-14	철도용지	1,152	
고한읍 고한리 산310-1	철도용지	2,380	
고한읍 고한리 산312-2	철도용지	808	

(고한읍 21리)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201호)	대	59	21리 1반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2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2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3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3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4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4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4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5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5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6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6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7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7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8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803호)	대	8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8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9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9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9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9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0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0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0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0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1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1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1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1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2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2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2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3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3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4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4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4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5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5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6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6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702호)	대	59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7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8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8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8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901호)	대	111	
고한읍 고한리 440(101동 1903호)	대	127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201호)	대	74	21리 2반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2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3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3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4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4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5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5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6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6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6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7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7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8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8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8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9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9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9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0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0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003호)	대	7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1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1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1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2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2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3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3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4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4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5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5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6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6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6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7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7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801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8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8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901호)	대	110	
고한읍 고한리 440(102동 19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201호)	대	59	21리 3반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403호)	대	8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6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8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8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9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9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9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0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0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0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1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1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1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2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4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602호)	대	7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3동 1802호)	대	116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201호)	대	59	21리 4반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2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2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3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3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4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4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5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5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6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6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6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7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7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8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8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8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901호)	대	59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9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9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9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0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0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0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0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1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1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1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104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2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2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2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3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3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4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4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5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5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6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6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702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703호)	대	74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4동 1802호)	대	110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201호)	대	59	21리 5반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2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204호)	대	8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3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3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4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4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4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5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5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6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6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7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7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8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8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8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8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9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9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9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9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0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0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0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0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1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1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103호)	대	84	

지번별	지목	지적(km ²)	비고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1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2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2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2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2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3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3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3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3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4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4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4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4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5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5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5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5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6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6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6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6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701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702호)	대	59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703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704호)	대	84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801호)	대	111	
고한읍 고한리 440(105동 1803호)	대	127	

정선군 규칙 제2022-1211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자연지명) 및 관할구역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역	
고한읍	고한 5리	제 1반	상갈래	【마을】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상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절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스카이빌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삼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절골아래	【마을】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중갈래삼거리	【마을】	고한 6리	제 1반	
	제 2반	더좋은오피스텔	【마을】	"	제 2반	
	제 3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3반	
고한 7리	제 1반	중갈래	【마을】	고한 7리	제 1반	
	제 2반	중갈래	【마을】	"	제 2반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 8리	제 1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고한 8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1반
고한 9리	제 1반	대원아파트	【마을】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고한연립주택, 당목,웃당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중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역전	【마을】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역	
고한읍	고한 11리 제 1반	막골	【마을】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막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막골 풋대봉,백운산	【마을】 【산】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범소(範小)마을【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하갈래	【마을】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토일(古土日),웃마을, 큰고들,골마을, 참배나무골,마당목이 마당목재,뒷재,두알재, 갈래재,소두문동재	【마을】 【고개】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아랫말,지름터, 음달모태이 목지넘이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작은고토일 승개이재 우암산	【마을】 【고개】 【산】	" 제 3반	
	" 제 4반	고토일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토일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토일	【마을】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진밭골,씨리덕	【마을】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부금소,신적,살갈매기, 삼봉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못골,지곡(池谷), 못골아파트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4반		
" 제 5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강원랜드,사원아파트, 등마을	【마을】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구사택,양지마을, 하당목	【마을】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고한 17리	제 4반	하갈래	【마을】	고한17리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아랫시장	【마을】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랫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랫시장	【마을】	"	제 7반
	"	제 8반	아랫시장	【마을】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웃시장	【마을】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웃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웃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웃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웃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웃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웃시장	【마을】	"	제 7반
	고한 20리	제 1반	고한아파트	【마을】	고한20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신설)	행복주택	【마을】	"	제 9반
	"	제 10반(신설)	행복주택	【마을】	"	제 10반
	"	제 11반(신설)	행복주택	【마을】	"	제 11반
	"	제 12반(신설)	행복주택	【마을】	"	제 12반
	고한 21리	제 1반	파인애플아파트(101동)	【마을】	고한21리	제 1반
		제 2반	파인애플아파트(102동)	【마을】	"	제 2반
		제 3반	파인애플아파트(103동)	【마을】	"	제 3반
		제 4반	파인애플아파트(104동)	【마을】	"	제 4반
		제 5반	파인애플아파트(105동)	【마을】	"	제 5반